



군민과 함께 희망을 여는 의회

〔 2026. 7. 14.(화) 〕
제339회 임시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완 도 군 의 회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607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14.

다. 상정일자 : 2026.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행정기구, 사무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서의 신설, 폐지, 통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부서신설) 미래전략과, 수산식품산업과
 - (부서폐지) 해양치유담당관, 해조류박람회추진단, 해양정책과
 - (부서통합)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명칭변경)

- 기획예산실 → 예산감사과
- 인구일자리정책실 → 인구일자리과
- 관광실 → 관광과
-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 가족행복과 → 가족돌봄과
- 경제교통과 → 경제산업과
- 수산경영과 → 해양수산물
- 환경수질관리과 → 환경수질과
-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에 맞춰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신설·폐지·통합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 및 소장의 직급 등)”을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담당관·과·추진단의 설치)”를 “(과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관광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를 “미래전략과, 수산식품산업과, 자치행정과, 예산감사과, 인구일자리과, 관광과”로,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를 “가족돌봄과, 경제산업과”로,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로, “안전총괄과를 둔다”를 “재난안전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담당관·과·추진단의”를 “과의”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와 농정기술과를 둔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

과를 둔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감독을,”을
“지휘·감독을, 각 과장과”로 한다.

① 보건의료원, 과 및 보건지소에는 각각 원장, 과장,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14조제2항 중 “조례”를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 등”을 “운영, 제10조제2항의 보건지소업무(진료 제외)
등”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전의 제2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u>실장 · 담당관 · 과장 · 추진단장 및 소장의 직급 등</u>)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u>실장 · 담당관 · 과장 · 추진단장</u> ,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 보건의료원장,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 · 면장 · 출장소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u>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u>) - ----- ----- <u>과장</u> ----- ----- ----- ----- ----- -----.
제4조(<u>실 · 담당관 · 과 · 추진단의 설치</u>) (생 략)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관광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u> 를 둔다. ② <u>실 · 담당관 · 과 · 추진단의</u>	제4조(<u>과의 설치</u>) (현행과 같음) ① ----- --- <u>미래전략과, 수산식품산업과, 자치행정과, 예산감사과, 인구일자리과, 관광과</u> ----- ----- <u>가족돌봄과, 경제산업과</u> ----- ----- <u>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u> ----- ----- ----- <u>재난안전과</u> 를 둔다. ② <u>과의</u> -----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8조(설치)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9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팀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

제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와 농정기술과를 둔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9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과 및 보건지소에는 각각 원장, 과장,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 지휘·감독을, 각 과장과 -----

--.

제1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u>조례</u> 로 정한다.	----- ----- <u>규칙</u> -----.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력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리)·반조직 <u>운영 등</u>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직무) ----- ----- ----- ----- --- <u>운영, 제10조제2항의 보건지소업무(진료 제외)등</u> ----- -----.

[별표 1]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64	완도군 전지역
금일읍·생일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94	금일읍·생일면 전지역
금당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0-1	금당면 전지역
노화읍·보길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613-3	노화읍·보길면 전지역
고금면·약산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17-16	고금면·약산면 전지역
청산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19-3	청산면 전지역
소안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38-3	소안면 전지역

[별표 1]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64	완도군 전지역
노화읍·보길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613-3	노화읍·보길면 전지역
고금면·약산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17-16	고금면·약산면 전지역
청산면 농업인상담소	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19-3	청산면 전지역

[별표 2]

보건의료원·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완도군 일원
완 도 군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70	완도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금일보건지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65-1	금일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노화보건지소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13	노화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녀도보건지소	완도군 노화읍 녀도길 278	노화읍 녀도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군외보건지소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58	군외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신지보건지소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67-1	신지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고금보건지소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길 23	고금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약산보건지소	완도군 약산면 구성길 3-3	약산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청산보건지소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40	청산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소안보건지소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213-1	소안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금당보건지소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0	금당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보길보건지소	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26-2	보길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생일보건지소	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590-32	생일면 일원
금 일 읍 충 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충도길 28	충도 일원
금 일 읍 사 동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일읍 죽동2길 25	월송, 동백, 죽동
금 일 읍 소 랑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1207	소랑도 일원
노 화 읍 동 부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노화읍 송원길 10	구목, 석중, 동고, 천구, 충도
노 화 읍 서 녀 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노화읍 서녀도길62-1	서녀도 일원
군 외 면 고 마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군외면 고마도길 53	고마도 일원
군 외 면 사 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46	사후도 일원
신 지 면 동 고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75	동고1구, 동고2구
고 금 면 덕 동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고금면 덕동길 32-1	덕동, 윤동, 화성, 충무
약 산 면 해 동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약산면 해동길 7	해동, 어두, 당목, 가사
청 산 면 모 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길 373	모도 일원(모동, 모서, 모북)
청 산 면 여 서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길 29-4	여서도 일원
소 안 면 진 산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소안면 소안남로 25	동진, 서중, 소진, 부상
소 안 면 횡 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길 22	횡간도 일원
금 당 면 삼 산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당면 삼산길 102-1	삼산, 신흥, 가학, 육동
보 길 면 정 자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527	정자, 정동, 선창, 보옥
보 길 면 중 리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보길면 중리길 1-1	중리, 통리, 여항, 백도
생 일 면 덕 우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길 18-7	덕우도 일원

[별표 2]

보건의료원·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완도군 일원
완 도 군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70	완도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금일보건지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65-1	금일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노화보건지소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13	노화읍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념도보건지소	완도군 노화읍 념도길 278	노화읍 념도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군외보건지소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58	군외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신지보건지소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67-1	신지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고금보건지소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길 23	고금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약산보건지소	완도군 약산면 구성길 3-3	약산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청산보건지소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40	청산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소안보건지소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213-1	소안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금당보건지소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0	금당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보길보건지소	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26-2	보길면 일원
완도군 보건의료원 생일보건지소	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590-32	생일면 일원
금 일 읍 충 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충도길 28	충도 일원
금 일 읍 사 동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일읍 죽동2길 25	월송, 동백, 죽동
금 일 읍 소 랑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1207	소랑도 일원
노 화 읍 동 부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노화읍 송원길 10	구목, 석중, 동고, 천구, 충도
노 화 읍 서 념 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노화읍 서념도길62-1	서념도 일원
군 외 면 고 마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군외면 고마도길 53	고마도 일원
군 외 면 사 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46	사후도 일원
신 지 면 동 고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75	동고1구, 동고2구
고 금 면 덕 동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고금면 덕동길 32-1	덕동, 윤동, 화성, 충무
약 산 면 해 동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약산면 해동길 7	해동, 어두, 당목, 가사
청 산 면 모 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길 373	모도 일원(모동, 모서, 모북)
청 산 면 여 서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길 29-4	여서도 일원
소 안 면 진 산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소안면 소안남로 25	동진, 서중, 소진, 부상
소 안 면 횡 간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길 22	횡간도 일원
금 당 면 삼 산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금당면 삼산길 102-1	삼산, 신흥, 가학, 육동
보 길 면 정 자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527	정자, 정동, 선창, 보옥
보 길 면 중 리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보길면 중리길 1-1	중리, 통리, 여항, 백도
생 일 면 덕 우 보 건 진 료 소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길 18-7	덕우도 일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위지연	○ 전복수산산업과→전복산업과 ○ 해양수산과→해양수산과 또는 해양수산정책과 ○ 경제산업과→산업혁신과 또는 산업관리과	○ 불수용 ○ 2026. 7. 7.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추관호	○ 전복수산산업과 → 수산식품산업과	○ 수용 ○ 신설 부서의 업무범위와 기능은 그대로 하되, 수산업 전반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정책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 명칭만 조정 ○ 2026. 7. 7.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위성은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통합 제고	○ 불수용 ○ 2026. 7. 8.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기구 개편 등에 따른 별도의 예산 증액이나 재정 변동 요인이 수반되지 않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어려우므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이진범 / 담당자 심무겸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 길 수

【의안번호 제3608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14.

다. 상정일자 : 2026.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행정기구, 사무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1)
 - 일반직 소계 742명 → 741명
 - 지도직 23명 → 21명
 - 일반직·지도직 0명 → 3명(복수)
- ※ 총 정원 772명 변동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직급별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72	753				19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42	723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700	684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5	5				-
	연구사	5	5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붙임 2

개 정 안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본청 내지 읍	면	의 회 사무과
합 계		772	753						19
정 무 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일 반 직	소 계	741	722						19
	3급	1	1	-	-	-	-	-	-
	4급	1	-	1	-	-	-	-	-
	4내지5급	3	-	-	-	-	3	-	-
	5급	34	19	2	1	-	-	9	3
	6급 이하	701	685						16
	전문경력관	1	1						-
연 구 직	소 계	5	5						-
	연구사	5	5						-
일 지 반 도 직 직	소 계	24	24						-
	일반직 내지 지도관	3	-	3	-	-	-	-	-
	지도사	21	21						-
별 정 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증액이나 세입 감소 요인이 수반
되지 않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어려우므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이진범 / 담당자 심무겸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 길 수

【의안번호 제3609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14.

다. 상정일자 : 2026. 7.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행정기구, 사무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읍면장 위임사무 수정(별표 1)
 - 부서 신설
 - 수산식품산업과
 - 명칭 변경
 -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 가족행복과 → 가족돌봄과

- 경제교통과 → 경제산업과
-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 해양수산과
- 환경수질관리과 → 환경수질과
-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현 행 안

[별표 1]

읍·면장 위임사항(제2조제2항 관련)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행정지원과	1. 읍·면 팀장요원 보직 발령권 2. 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3. 소속직원의 관내·외 출장 4. 이(里) 행정지도 5. 해당 읍·면사무소 당직명령 6.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복명서 처리 7. 배정예산범위 안의 일용인부사역 8.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9. 해당 읍·면 소속직원 팀 간 이동 10. 해당 읍·면 소속직원 사무분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행정지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완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세무회계과	1. 지방세 50,000원 미만 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

	2.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3.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4. 부동산 과세대장 정리 및 조사 5. 불용품 매각 처리 6. 읍·면예산 범위 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7. 지방세 징수 8.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9. 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변상금 포함)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0. 개별주택 특성조사	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제94조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조
민원봉사과	1. 건축물신고 및 착공신고 수리 2. 무허가 건축물 단속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4.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5. 토지 등의 출입 6.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건축법」 제14조, 제21조, 제82조 「건축법」 제79조, 제82조 「건축법」 제20조, 제82조 「건축법」 제82조, 제8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조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	「주민등록법」 제2조,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주민복지과	1. 자활근로사업비 집행 2.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제19조
가족행복과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조치 2. 매장 · 개장 · 화장신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8조
경제교통과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 시장 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3. 시장부지 사용허가 4. 공장등록 증명 5.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정책과	1.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점용 단속 2. 완도군 부두잔교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9조 「완도군 부두잔교 사용조례」

수산경영과	1. 수산물가공업 신고수리 2. 어업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3.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수리 4. 어장청소실시계획서 접수 5. 어장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및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7. 어장관리 실태조사 및 어업권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8.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9. 어장관리선 지정업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수산업법」 제47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수산업법」 제72조 「수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산림휴양과	1. 산불예방 및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 3. 가로수관리 4. 소공원관리 5. 도로변 풀베기	행정지시 행정지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제23조 행정지시

	6. 등산로 관리	행정지시 행정지시
환경수질 관 리 과	1. 폐기물 투기 단속 2.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및 징수 3.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 전기차 완속충전기 유지관리 6.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장비, 인력의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행정지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31조
지역개발과	1. 완도군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건설과	1. 2,000만원 이하 토목공사 측량설계 2. 토목공사 감독 3. 접도구역 관리 4. 도로 점·사용허가 5.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6.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 7. 양수기 유지관리	행정지시 행정지시 「도로법」 제40조, 제110조 「도로법」 제61조, 제110조 「도로법」 제66조, 제110조 「도로법」 제27조, 제110조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8.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 9.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지도·단속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110조
안전총괄과	1. 재해이재민 구호 2. 건축물 해체 신고 3. 건축물 멸실 신고	「재해구호법」 제7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관리법」 제34조

붙임 2

개정안

[별표 1]

읍·면장 위임사항(제2조제2항 관련)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산식품 산업과	1. 수산물가공업 신고수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자치행정과	1. 읍·면 팀장요원 보직 발령권 2. 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3. 소속직원의 관내·외 출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4. 이(里) 행정지도 5. 해당 읍·면사무소 당직명령 6.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복명서 처리 7. 배정예산범위 안의 일용인부사역 8.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9. 해당 읍·면 소속직원 팀 간 이동 10. 해당 읍·면 소속직원 사무분장	행정지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완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세무회계과	1. 지방세 50,000원 미만 결손처분 2.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3.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4. 부동산 과세대장 정리 및 조사 5. 불용품 매각 처리 6. 읍·면예산 범위 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7. 지방세 징수 8.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9. 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변상금 포함)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0. 개별주택 특성조사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제94조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민원봉사과	1. 건축물신고 및 착공신고 수리 2.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법」 제14조, 제21조, 제82조 「건축법」 제79조, 제82조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4.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5. 토지 등의 출입 6.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 9. 건축물 해체 신고 10. 건축물 멸실 신고	「건축법」 제20조, 제82조 「건축법」 제82조, 제8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주민등록법」 제2조,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주민복지과	1. 자활근로사업비 집행 2.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제19조
가족돌봄과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조치 2. 매장·개장·화장신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경제산업과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 시장 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3. 시장부지 사용허가 4. 공장등록 증명 5.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수산과	1. 완도군 부두잔교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2.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점용 단속 3. 어업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완도군 부두잔교 사용조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9조 「수산업법」 제47조

	4.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수리 5. 어장청소실시계획서 접수 6. 어장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및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8. 어장관리 실태조사 및 어업권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9.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0. 어장관리선 지정업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수산업법」 제72조 「수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산림휴양과	1. 산불예방 및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 3. 가로수관리 4. 소공원관리 5. 도로변 풀베기 6. 등산로 관리	행정지시 행정지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제23조 행정지시 행정지시 행정지시
환경수질과	1. 폐기물 투기 단속 2.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및 징수 3.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 전기차 완속충전기 유지관리 6.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소각시설,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행정지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31조

	매립시설 등), 장비, 인력의 관리	
지역개발과	1. 완도군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건설과	1. 2,000만원 이하 토목공사 측량설계 2. 토목공사 감독 3. 접도구역 관리 4. 도로 점·사용허가 5.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6.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 7. 양수기 유지관리 8.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 9.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지도·단속	행정지시 행정지시 「도로법」 제40조, 제110조 「도로법」 제61조, 제110조 「도로법」 제66조, 제110조 「도로법」 제27조, 제110조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110조
재난안전과	1. 재해이주민 구호	「재해구호법」 제7조
보건의료원	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2. 헬기장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법정감염병 관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비만·영양·음주폐해), 출산 장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및 통합돌봄(방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6조의3, 47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모자보건법」 제3조 「완도군 노인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구강)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암관리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통합돌봄지원법」 제16조 「치매관리법」 제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완도군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권한 위임 등에 따른 별도의 예산 증액이나 수입 감소 요인이 수반되지 않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어려우므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이진범 / 담당자 심무겸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 길 수